

建設交通 常任委員會 會議結果報告

■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건설교통위원회

□ 일 시 : 2014. 4. 23(수) 10:00 ~ 12:50

□ 안 건

1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[윤재상의원]
2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[안병배의원]
3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[인천광역시장]
4.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
5.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6.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안
7.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8.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학교(경인여대)] 결정(변경)안
9.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

□ 장 소 :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

□ 참 석 : 4名(이도형, 이재병, 정수영, 김병철 의원)

※ 참석공무원 :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등 40명

□ 부의안건

1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[윤재상의원]

⇒ 보류

※ 보류사유 : 집행부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불법훼손 악용을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부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.

○ 질의 및 답변

-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며 적지복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(김병철 의원)

⇒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음.

- 적지복구율이 낮은 이유는?(이재병 의원)

⇒ 향후 개발을 염두에 두는 등 개별적인 이유 및 상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영원히 개발을 못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복구율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? (이재병 의원)

-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재 등 관리방안을 강화한다면 향후 불법을 강력하

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나, 개발을 영원히 제한하는 내용은 복구 의지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함.(김병철 의원)

⇒ 지금이라도 관리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- 억울한 사례에 대하여는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, 불법훼손을 차단할 수 있는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하므로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(정수영 의원)

- 타 시도 사례 중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한 사례가 있는지?(이도형 의원)

⇒ 없음.

- 그렇다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 왜 제기되는지?(이도형 의원)

⇒ 조문상에 불법 훼손지에 대한 허가제한 내용을 담은 것은 인천시가 유일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, 다만 조문상의 차이 일뿐 실질적으로는 타 시도와 차이가 없음.

2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[안병배의원]

⇒ 원안가결

○ 질의 및 답변

- 투자유치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장점과 환경저해 요인 등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,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유치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(정수영 의원)

⇒ 환경적인 문제를 보완한다면 괜찮을 것임.

- 금번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투자유치가 무산되는 비용은 얼마인가?(이도형 의원)

⇒ 600억원임.(투자유치담당관)

- 조례 개정이 안되어 증개축이 불가능하게 되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신규투자가 불가능하면 향후 공장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(이도형 의원)

⇒ 그럴 가능성이 있음.(도시계획국장)

⇒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(투자유치담당관)

3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[인천광역시장]

⇒ 수정가결

○ 질의 및 답변

- 안제64조제2항 취락지구의 건폐율 중 도서지역인 경우 건폐율을 60%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하여(이도형 의원)

⇒ 웅진군의 기관 건의 사항으로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임.

- 안 제36조 제1항 중 “주거지역”을 “주택 밀집지역”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?(김병철 의원)

⇒ 그렇습니다.

4.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

⇒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.

○ 질의 및 답변

- 없음.

5.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⇒ 원안가결

○ 질의 및 답변

- 찾아가는 주거복지에 대하여 검토해볼 생각이 있는지?(김병철 의원)

⇒ 기본적으로 동의함.(도시계획국장)

6.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안

⇒ 원안가결

○ 질의 및 답변

- 없음.

7.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⇒ 원안가결

○ 질의 및 답변

- 없음.

8.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학교(경인여대)] 결정(변경)안

⇒ 원안가결

○ 질의 및 답변

- 없음.

9.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

○ 질의 및 답변

- 부평경찰학교 이전 건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(이재병 의원)

⇒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.

- LH의 개발협약변경 요구는 협약위반 아닌가?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해법이 무엇인가?(김병철 의원)

⇒ 루원씨티사업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시에서 단독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.

- 지난 재건축·재개발 매몰비용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국회의 법률 처리 진행상황은?(정수영 의원)

⇒ 계류중인 법안들이 있으나, 법안처리는 진척이 미비한 상황임.

- 정부는 지자체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, 시의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것은 우려가 되므로 정부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등 신중히 접근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임(정수영 의원)

- 또한, 추진의사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임.(정수영 의원)

⇒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.

- 주민들이 매몰비용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(김병철 의원)

⇒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음.

일 시	차수	심 사 안 건	비 고
4.24(목)	3	1.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.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	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

보고자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